

# 임상영양실습 협약약정서

대구대학교(이하 "대학")와 대구파티마병원(이하 "실습기관")은 「임상영양실습」(이하 "실습")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 본 협약은 "대학"과 "실습기관"이 국민보건향상과 임상영양 분야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"실습"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협약사항) 협약당사자는 "실습"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- ① "실습기관"은 "대학" 소속 학생의 "실습" 프로그램 제공에 적극 협력하며, "실습기관"의 실습지도 겸임교수는 자체 실습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적절한 임상영양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
- ② "대학"의 전공전임교수는 소속 학생이 "실습기관"에서 "실습"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리하며, 참여한 학생의 실습비용을 "실습기관"에 지급한다.
- ③ "대학"과 참여 학생은 "실습"을 통해 알게 되는 "실습기관" 및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④ "실습기관"은 학생과 "실습"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,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임상영양실습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.

제 3조 (효력)

- ①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로부터 본 협약서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 협약에 따라 의뢰한 학생이 있을 경우, 그 학생의 실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본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- ④ 협약기간 중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, 양기관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협약기간 중에도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.

제4조 (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.

제5조 (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)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사항 이외에 추가되거나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.

제6조 (신의성실)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 노력한다.

제7조 (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)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에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12 년 7 월 11 일

대구대학교 총장

홍 덕 릉

(인)

대구파티마병원 원장

장 증 태

(인)

